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원본대조필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1:30~3:35,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4월 20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김대식, 최원일,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0명) :

4. 회의안건

(1) 심의안건

1) 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건

2) 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3) 법인 2021학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4)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5)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6)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7)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8) 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9)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10) 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조정의 건

(2) 보고 사항 :

5. 회의내용 :

(1) 이사장은 법인 서이남 행정실장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2) 서이남 행정실장은 재적이사 8명 중 8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3) 이사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학년도 제2차 법인이사회 개최를 선언한 후, 전차 회의록 보고를 행정실장에게 요청하자, 보고하고 이의 없음을 접수하다.

(4) 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간다.

6. 토의 및 결의: 법인 정관변경(안) 심의 건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최원일	이사	이 순 걸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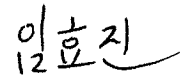
- (1)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서이남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과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2)행정실장은 법인정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62조 제4항 제5호, 제72조의 4, 5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7 개정사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인정관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 (3)최원일이사가 정관의 변경내용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하자, 김대식이사가 재청하니, 강정호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이되다.
- (4)이사장은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정관 변경(안)이 붙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5)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김대식이사가 이사장, 최원일,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장제국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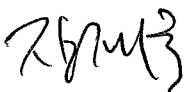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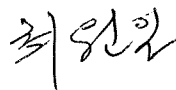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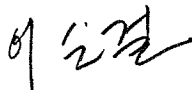
이 사 임 효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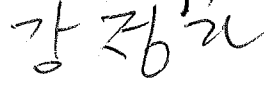
이 사 장 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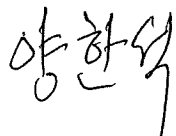
이 사 김 대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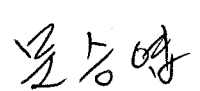
이 사 최 원 일 

이 사 오 병 태 

이 사 이 순 걸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감 사 문 승 엽 

학교법인 동서학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행	개정	비고
<u>제25조(이사회)의 소집</u> ③ 법인정관 제26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u>제25조(이사회)의 소집</u> ③ ----- ----- <u>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u> ----- -----	사립학교법 제17조 반영
<u>제50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u>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u><신설></u>	<u>제50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u> ① ----- <u>9인</u> -----. ② ----- 1. ----- 2. ----- ----- 가. ----- ----- 나. ----- ----- 다. ----- 라. ----- ----- ③ ----- ----- ④ ----- ----- ⑤ <u>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	사립학교법 제24조의7 개정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5호의 개정
제6장 교직원 제 4 절 <u><신설></u> <u>제64조의2 <신설></u>	제6장 교직원 제 4 절 (청렴의무 및 행동강령) <u>제64조의2(청렴의무) 이 법인의 임직원 및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개정
<u>제64조의3 <신설></u>	<u>제64조의3(행동강령) 제64조의2에 따른 청렴준수를 위한 행동강령을 별표6과 같이 정한다.</u>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개정
(별표 6) <u><신설></u>	(별표 6) 학교법인 동서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 개정
<u>부칙(시행일) <신설></u>	<u>부칙</u>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정관 제25조, 제50조, 제4절은 (청렴의무 및 행동강령), 제64조의2(청렴의무) 및 제64조의3(행동강령)은 개정은 사립학교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u><신설></u>

간서명 대표	이사장	홍종민	이사	최영인	이사	이승걸
-----------	-----	-----	----	-----	----	-----

학교법인 동서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법인 동서학원(이하 '법인' 이라고 한다) 소속 임원 및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이란 법인과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이하 "대학교" 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비전임교원,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원 및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원 및 교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법인과 대학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허가, 승인, 검사, 점검, 지도, 평가, 감사,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법인 및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법인과 대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와 학부모단체
 - 아. 그 밖에 법인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 이란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원 및 교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을 말한다.
 - 가. 임원 및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수행 결과에 영향을 받는 임원 및 교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원 및 교직원
 - 라. 그 밖에 법인 이사장이 정하는 임원 및 교직원
4. "금품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법인과 대학교에 속한 모든 임원 및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원 및 교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최원민	이사	이승철
------------	-----	-----	----	-----	----	-----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원 및 교직원은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및 교직원이 법인 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관련자 또는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제4항 각 호의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원 및 교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 ③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요청

간서명 대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최원익	이사	이승걸
-----------	-----	-----	----	-----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교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법인이 쟁송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이사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원 및 교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법인과 소속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 및 교직원을 포함한다)은 법인과 소속 학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원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은 법인 및 학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10조(특혜의 배제)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서명 대표	이사장	박동수	이사	최인민	이사	이은결
-----------	-----	-----	----	-----	----	-----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원 및 교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원 및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원 및 교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5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원 및 교직원 및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임원 및 교직원 및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 및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간서명 대표	이사장	박동수	이사	최원익	이사	이은결
-----------	-----	-----	----	-----	----	-----

6.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법인 이사장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각종 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2. 각종 시험
3. 학생대상 각종 대회 추진
4. 신입생 배정 및 전학입학퇴학
5. 외부강사·운동부코치·원어민교사 등 초·중·고·대 및 관리
6. 저소득층 자녀 지원
7. 체육 특기자 선발 및 육성
8. 현장실습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업무
9. 임원 및 교직원 채용
10. 제증명 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
11. 각종 교구·설비 확충·운영·유지보수 등의 계획수립·예산편성 및 추진
12. 학교(대학)법인 재산 처분
13.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업무
14. 각종 시설사업 계획수립·예산편성 및 추진

제19조(학교재산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법인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관계의 우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 동 순	이사	최 소 인	이사	이 승 결
------------	-----	-------	----	-------	----	-------

1.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신체에 대한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 욕설이나 폭언, 명예 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원 및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4. 허가·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원 및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법인과 소속 학교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법인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중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사장이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중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원 및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원 및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원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원 및 교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종운	이사	최원익	이사	이은길
------------	-----	-----	----	-----	----	-----

- ⑤ 임원 및 교직원(이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라 한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원 및 교직원은 다른 임원 및 교직원에게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원 및 교직원은 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법인 및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임원 및 교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 및 교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임원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임원 및 교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임원 및 교직원은 월 1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 동 수	이사	최 원 모	이사	이 승 결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원 및 교직원에게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 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원 및 교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원 및 교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구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구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원 및 교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교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및 교직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원 및 교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원 및 교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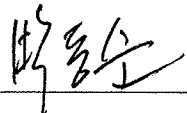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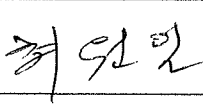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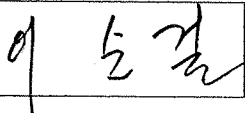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간서명 대표	이사장	백영준	이사	최영익	이사	이은길
-----------	-----	-----	----	-----	----	-----

- 제28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거부) ① 법인 및 소속 학교를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직자가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임원 및 교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거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해당 임원 및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3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33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법인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 ② 이사장은 제22조를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원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원 및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원 및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원 및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 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폐기 처분한다.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 등·제공 자·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5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최원익	이사	이은길
------------	-----	-----	----	-----	----	-----

2.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원 및 교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금지 등을 담당하는 각 산하기관 소속 담당관을 산하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도훈	이사	최원근	이사	이승걸
------------	-----	-----	----	-----	----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2조제3항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임원 및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간서명 대표	이사장	박종순	이사	최원익	이사	이은경
-----------	-----	-----	----	-----	----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사례금	비고
상한액	100만원	이사장, 임원, 학교장, 그 외 교직원 등 직급 구분 없음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 외국학술단체 등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비 고

-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원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교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종순	이사	최원익	이사	이은경
------------	-----	-----	----	-----	----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3조 관련)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했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정직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파면-해임	파면
비 고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 [별표 1] 준용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종수	이사	최원익	이사	이은결
------------	-----	-----	----	-----	----	-----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1:30~3:35,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4월 20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김대식, 최원일,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0명) :

4.회의안건

(1)심의 안건

1)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건

2)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3)법인 2021학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4)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5)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6)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7)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8)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9)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10)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조정의 건

(2) 보고 사항

5. 회의내용 :

(1)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2)이사장은 회의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

6. 토의 및 결의: 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1)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인 최원일이사 임기만료(2022년 6월 4일)에 따른 후임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2)이순걸이사가 최원일 이사는 양상백 전임이사의 잔여임기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계속해서 법인과 대학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연임을 추천하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최원일	이사	이순걸
------------	-----	-----	----	-----	----	-----

- (3)이사장이 다른 이사들의 추천을 묻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니, 임효진이사가 이순걸이사의
최원일이사 연임추천에 동의를 표하고, 김대식이사가 재청, 강정호이사가 삼청, 나머지 이사 모
두가 찬성의 뜻을 밝히므로 이사추천이 가결되다.
- (4)이사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법인임원의 인사에 관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추천된 최원일이사는 제
척사항으로 회의장 밖으로 자리를 비우게 한 후 회의를 진행하다.
- (5)이사장이 선임방법에 대하여 묻자, 오병태이사가 법인이사 선임 관례대로 비밀투표로 선임방법
을 제안하자, 나머지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선임방법이 가결되다.
- (6)선임방법에 따라,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이사 선임 건에 대한 투표용지를 배부하게 하고, 후보자
기명 후 회수하여 집계한 결과, 투표 임원 7명중 7명 전원이 최원일 현 이사를 기명한 결과를
발표하다.
- (7)이사장은 최원일이사를 들어오게 한 후, 투표 결과와 축하의 말을 전하자, 최원일이사는 법인이
사로서 계속해서 동서학원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수락의사를 표
하다.
- (8)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다.

- 다 음 -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비 고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 사 (교육)	최 원 일	1962.11.04	2022.06.05.~2026.06.04	연임

- (9)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김대식이사가 이사장, 최원일,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장제국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4. 28.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장 제 국	이 사 김 대 식
이 사 최 원 일	이 사 오 병 태
이 사 이 순 걸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감 사 문 승 엽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원본대조필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1:30~3:35,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4월 20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호진, 장제국, 김대식, 최원일,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0명) :

4. 회의안건

(1) 심의안건

- 1) 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건
- 2) 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 3) 법인 2021학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4)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 5)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 6)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 7)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8) 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 9)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 10) 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조정의 건

(2) 보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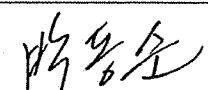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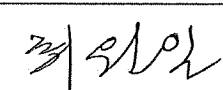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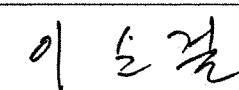
5. 회의내용 :

- (1) 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됨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 (2) 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

6. 토의 및 결의: 2021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2021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심의>

(1) 이사장은 회의 안건이 2021학년도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심의 건이라고 설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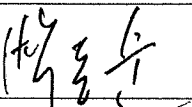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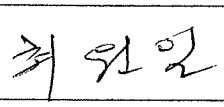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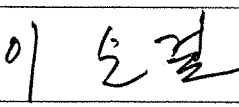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결산보고에 앞서 결산감사에 대한 내부감사결과는 문승엽 감사(공인회계사)에게, 그리고 외부감사결과와 결산에 대해서는 서이남 행정실장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다.

- (2)문승엽 감사(공인회계사)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법인과 산하 대학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참석한 이사들에게 배포한 후 감사내용을 설명하고 감사결과는 예산 항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각종 증빙서류가 적법하게 잘 구비되어 있어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한다.
- (3)서이남 행정실장은 법인의 결산 외부감사는 부일회계법인에서 진행하였으며 외부감사의견은 2021학년도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이어서 법인의 일반회계 결산은 수입·지출 총액이 1,107,932천원, 수익사업회계 수입·지출 총액이 50,845,283천원으로된 결산된 수입·지출 결산을 총괄표를 통해 항목별로 설명하다.
- (4)이사장은 2021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내용과 내·외부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는지 묻고, 토의 및 결의를 계속 진행하다.
- (5)최원일이사가 2021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내·외부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없고, 결산보고서와 결산집계표를 검토해 본바, 기 이사회에서 승인된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예산을 근거로 집행되었고,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음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하다.
- (6)오병태이사가 동의에 재청하고, 강정호이사가 삼청하니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2021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다.
- (7)이사장은 의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수입총액 1,107,932천원, 지출액 1,083,105천원, 미사용차기이월금 24,827천원으로된 2021학년도 법인 일반회계 결산과 수입총액 50,845,283천원, 지출액 11,846,096천원, 미사용차기이월금 38,999,187천원으로된 법인 수익사업회계 결산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2022학년도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1)이사장은 계속해서 2022학년도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이라고 설명하고, 서이남 행정실장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2)행정실장은 우리 법인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리운영비 증액과 수익사업 운영수익금 증액 세입, 수익용 유가증권(TV조선방송)의 배당수입 계상하여, 2022학년도 본예산 대비 총 280,946천원 증액한 1,752,827천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이어서,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법인 수익용재산(DS빌딩) 매각에 따른 법인세 납부를 2021학년도 결산에 미지급금처리로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307,617천원 감액된 43,407,187천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계표를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 (3)최원일이사가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후, 2022학년도 법인의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니, 임효진이사가 재청하고, 오병태이사가 삼청하니 나머지 이사 모두가 찬성의 뜻을 표하여 가결되다.

간서명 대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4)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김대식이사가 이사장, 최원일,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장제국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3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4. 28.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박동순	이 사	임 효 진	임효진
이 사	장 제 국	장제국	이 사	김 대 식	김대식
이 사	최 원 일	최원일	이 사	오 병 태	오병태
이 사	이 순 결	이순걸	이 사	강 정 호	강정호
감 사	양 한 석	양한석	감 사	문 승 엽	문승엽

2021학년도 법인 일반회계/수익사업회계 결산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관 별	예산(A)	결산(B)	증감(B-A)	비율(%)	관 별	예산(A)	결산(B)	증감(A-B)	비율(%)
전입및기부수입	1,120,000	1,105,950	-14,050	99.8	보 수	313,281	312,160	1,121	28.2
교 육 외 수 입	400	349	-51	0.0	관 리 운 영 비	157,071	140,345	16,726	12.6
고정자산매입수입	0	0	0	0	교 육 외 비 용	0	0	0	0.0
고정자산매입수입	0	0	0	0	전 출 금	630,000	630,000	0	56.9
					예 비 비	20,000	0	20,000	0.0
					고정자산매입지출	1,000	600	400	0.1
당 기 운 영 수 입 계	1,120,400	1,106,299	-14,101	99.8	당 기 운 영 지 출 계	1,121,352	1,083,105	38,247	97.8
전 기 이 월 금	1,633	1,633	0	0.2	차 기 이 월 금	681	24,827	-24,146	2.2
자금수입총계	1,122,033	1,107,932	-14,101	100	자금지출총계	1,122,033	1,107,932	14,101	100

<수익사업회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관 별	예산(A)	결산(B)	증감(B-A)	비율(%)	관 별	예산(A)	결산(B)	증감(A-B)	비율(%)
영 업 수 익	3,499,178	3,392,138	-107,040	6.7	보 수	163,237	152,570	10,667	0.3
영 업 외 수 익	129,200	127,877	-1,323	0.3	관 리 운 영 비	9,638,693	9,523,090	115,603	18.7
투자자산매각수입	35,000	0	-35,000	0.0	영 업 외 비 용	94,928	89,516	5,412	0.2
고정자산매각수입	42,387,028	42,387,028	0	83.4	전 출 금	1,070,000	1,020,000	50,000	2.0
유동부채입금	-	0	0	0.0	예 비 비	40,461	0	40,461	0.0
고정부채입금	450,000	416,500	-33,500	0.8	투자자산매각지출	6,000	0	6,000	0.0
					고정자산매입지출	31,806,000	66,000	31,740,000	0.1
					유동부채상환	30,000	0	30,000	0.0
					고정부채상환	4,504,920	994,920	3,510,000	2.0
당 기 운 영 수 입 계	46,500,406	46,323,543	-176,863	99.2	당 기 운 영 지 출 계	47,354,239	11,846,096	35,508,143	23.3
전 기 이 월 자금	4,521,740	4,521,740	0	8.8	차 기 이 월 자금	3,667,907	38,999,187	-35,331,280	76.7
자금수입총계	51,022,146	50,845,283	-176,863	100	자금지출총계	51,022,146	50,845,283	176,863	100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 동 수	이사	최 원 일	이사	이 승 결
------------	-----	-------	----	-------	----	-------

2022학년도 법인 일반회계/수익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관 별	2022학년도 1차추경(A)	2022학년도 예산(A)	증감 (A-B)	비율 (%)	관 별	2022학년도 1차추경(A)	2022학년도 예산(A)	증감 (A-B)	비율 (%)
전입및기부수입	1,660,000	1,470,000	190,000	94.7	보 수	371,215	314,051	57,164	21.2
교 육 외 수 입	68,000	200	67,800	4.0	관 리 운 영 비	332,071	112,071	220,000	18.9
투자외 기타자산	0	0	0	0.0	교 육 외 비 용	0	0	0	0.0
고정자산매입수입	0	0	0	0.0	전 출 금	1,022,800	1,022,800	0	58.4
					예 비 비	20,000	20,000	0	1.1
					투 자 외 기 타 자 산 지 출	0	0	0	0.0
					고정자산매입지출	1,000	1,000	0	0.1
당 기 운 영 수 입 계	1,728,000	1,470,200	257,800	98.7	당 기 운 영 지 출 계	1,747,086	1,469,922	277,164	99.7
전 기 이 월 자 금	24,827	1,681	23,146	1.3	차 기 이 월 자 금	5,741	1,959	3,782	0.3
자금수입총계	1,752,827	1,471,881	280,946	100	자금지출총계	1,752,827	1,471,881	280,946	100

<수익사업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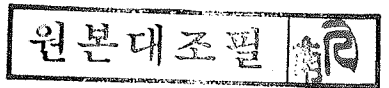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관 별	2022학년도 1차추경(A)	2022학년도 예산(A)	증감 (A-B)	비율 (%)	관 별	2022학년도 1차추경(A)	2022학년도 예산(A)	증감 (A-B)	비율 (%)
영 업 수 익	3,323,950	3,179,950	144,000	7.7	보 수	174,456	174,456	0	0.4
영 업 외 수 익	679,050	679,050	0	1.6	관 리 운 영 비	1,944,896	9,301,896	-7,357,000	4.5
투자외기타자산수입	5,000	5,000	0	0.0	영 업 외 비 용	148,703	147,083	1,620	0.3
고정자산매각수입	0	0	0	0.0	전 출 금	1,610,000	1,420,000	190,000	3.7
고정부채입금	400,000	400,000	0	0.9	예 비 비	40,461	40,461	0	0.1
					투자와기타자산지출	6,000	6,000	0	0.0
					고정자산매입지출	31,407,301	31,407,301	0	72.4
					유동부채상환	0	0	0	0.0
					고정부채상환	4,004,920	4,004,920	0	9.2
당 기 운 영 수 입 계	4,408,000	4,264,000	144,000	10.2	당 기 운 영 지 출 계	39,336,737	46,502,117	-7,165,380	90.6
전 기 이 월 자 금	38,999,187	46,450,804	-7,451,617	89.8	차 기 이 월 자 금	4,070,450	4,212,687	-142,237	9.4
자금수입총계	43,407,187	50,714,804	-7,307,617	100	자금지출총계	43,407,187	50,714,804	-7,307,617	100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종순	이사	최원익	이사	이승걸
------------	-----	-----	----	-----	----	-----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1:30~3:35,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4월 20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김대식, 최원일,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0명) :

4. 회의안건

(1) 심의안건

1) 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건

2) 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3) 법인 2021학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4)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5)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6)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7)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8) 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9)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10) 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조정의 건

(2) 보고사항

5. 회의내용 :

(1) 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이 2021학년도 동서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이라고 설명하다.

6. 토의 및 결의: 2021학년도 동서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심의 건

(1) 이사장은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해, 내부감사결과는 문승엽 감사(공인회계사)에 게 보고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부감사자로 선임된 부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와 교비회계 결산보고 를 동서대학교 박성오 재무본부장에게 요청하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최원일	이사	이순걸
------------	-----	-----	----	-----	----	-----

(2)문승엽 감사(공인회계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법인과 산하 대학의 회계 감사를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각 이사들에게 배포한 후, 감사내용을 설명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에 따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분리된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는 예산 항·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각종 증빙서류가 적법하게 잘 구비되어 있어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한다.

(3)박성오 재무본부장은 동서대학교 교비회계 수입·지출총액이 114,783,569천원으로된 2021학년도 결산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집계표를 통해 항목별로 설명하다. 외부감사의견은 2021학년도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보고하다.

(4)이사장은 보고받은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보충 질의가 있는지 묻고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5)최원일이사가 동서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서의 세입·세출에 대해 검토한바, 문승엽 감사의 감사보고와 일치하며 모든 예산이 명확하게 집행되었고, 부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하다.

(6)임효진이사가 재청하고 오병태이사가 삼청하니 참석한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다.

(7)이사장은 이사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총수입액 114,783,569천원, 지출액 109,779,394천원, 미사용차기이월금 5,004,175천원으로된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8)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청하자고 하자, 김대식이사가 이사장, 최원일,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장제국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4. 28.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박동순

이 사 임 효 진

임효진

이 사 장 제 국

장제국

이 사 김 대 식

김대식

이 사 최 원 일

최원일

이 사 오 병 태

오병태

이 사 이 순 결

이순걸

이 사 강 정 호

강정호

감 사 양 한 석

양한석

감 사 문 승 엽

문승엽

2021학년도 동서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총괄표

<수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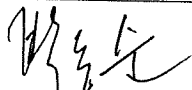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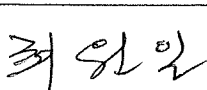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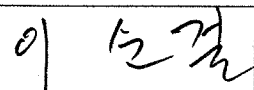
(단위:천원)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비율(%)
등 록 금 수 입	66,424,343	66,471,720	47,377	57.9
전입금 및 기부수입	38,599,364	37,424,321	-1,175,043	32.6
교 육 부 대 수 입	3,151,955	3,004,011	-147,944	2.6
교 육 외 수 입	940,661	1,001,390	60,728	0.9
투자및기타자산수입	0	0	0	0.0
고정자산매각수입	6,302	7,027	725	0.0
고 정 부 채 입 금	56,000	54,600	-1,400	0.1
미사용전기이월자금	6,820,499	6,820,499	0	5.9
총 계	115,999,125	114,783,569	-1,215,556	100

<지 출>

(단위:천원)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율(%)
보 수	53,214,907	52,799,531	415,376	46.0
관 리 운 영 비	12,691,672	11,417,274	1,274,398	10.0
연구 · 학생경비	42,924,776	41,716,619	1,208,157	36.3
교 육 외 비 용	482,986	449,836	33,150	0.4
전 출 금	0	0	0	0.0
예 비 비	474,511	0	474,511	0.0
투자및기타자산지출	93,123	92,971	152	0.0
고정자산매입지출	3,296,870	3,270,883	25,987	2.9
고 정 부 채 상 환	34,167	32,280	1,887	0.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786,112	5,004,175	-2,218,062	4.4
총 계	115,999,125	114,783,569	1,215,556	100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원본대조필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1:30~3:35,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4월 20일)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김대식, 최원일,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0명) :

4.회의안건

(1)심의 안건

- 1)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건
- 2)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 3)법인 2021학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4)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 5)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 6)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 전용결과 보고 건
- 7)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8)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 9)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 10)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조정의 건

(2)보고사항

5. 회의내용 :

- (1)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 (2)이사장은 회의 안건이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 전용결과 보고 심의 건이라고 설명하다.

6. 토의 및 결의: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 (1)이사장은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해, 내부감사결과는 문승엽 감사(공인회계사)에게 보고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부감사자로 선임된 부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와 교비회계 결산 보고를 임재경 재무본부장에게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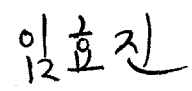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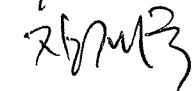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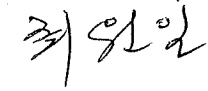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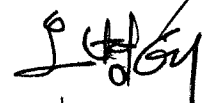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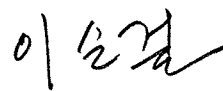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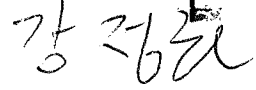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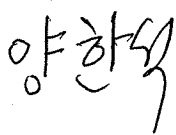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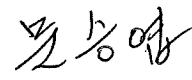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최원일	이사	이순걸
------------	-----	-----	----	-----	----	-----

- (2)문승엽 감사(공인회계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법인과 산하 대학의 회계 감사를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각 이사들에게 배포한 후, 감사내용을 설명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에 따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분리된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는 예산 항·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각종 증빙서류가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어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한다.
- (3)임재경 재무본부장은 경남정보대학교 교비회계 수입·지출 총액이 63,091,520천원으로된 2021학년도 결산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집계표를 통해 항목별로 설명하다. 외부감사의견은 2021학년도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보고하다. 계속 이어서 예산전용에 관련한 사항을 준비한 자료를 참조하여 자세히 보고하다.
- (4)이사장은 보고받은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 그리고 예산전용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보충질의가 있는지 묻고 토의 및 결의를 진행하다.
- (5)이순걸이사가 경남정보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서의 세입·세출에 대해 검토한 바, 문승엽 감사의 감사보고와 일치하며 모든 예산이 명확하게 집행되었고, 부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와 경남정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본 결산(안)과 예산전용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하다.
- (6)강정호이사가 재청하고 임효진이사가 삼청하니, 참석한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경남정보대학교의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안과 예산전용 결과보고가 원안대로 가결되다.
- (7)이사장은 이사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총 수입액 63,091,520천원, 지출액 60,374,913천원, 미사용 차기이월금 2,716,607천원으로된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8)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김대식이사가 이사장, 최원일,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장제국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4. 28.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장 제 국		이 사	김 대 식	
이 사	최 원 일		이 사	오 병 태	
이 사	이 순 결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감 사	문 승 엽	

2021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총괄표

<수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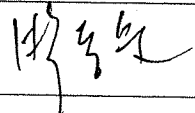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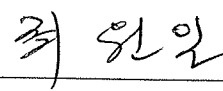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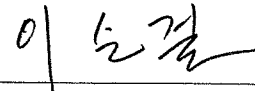
(단위:천원)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비율(%)
등 록 금 수 입	35,732,071	35,715,254	-16,817	56.61
전입금 및 기부수입	21,064,977	20,889,079	-175,898	33.11
교 육 부 대 수 입	2,044,392	2,074,022	29,630	3.29
교 육 외 수 입	216,616	228,441	11,825	0.36
투자외기타자산수입	1,781,879	1,753,130	-28,749	2.78
고정자산 매각수입	0	6,252	6,252	0.01
고 정 부 채 입 금	15,000	15,000	0	0.02
전 기 이 월 자 금	2,410,343	2,410,342	-1	3.82
총 계	63,265,278	63,091,520	-173,758	100

<지 출>

(단위:천원)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율(%)
보 수	26,783,441	26,746,550	36,891	42.39
관 리 운 영 비	6,061,749	5,514,550	547,199	8.74
연 구 . 학 생 경 비	24,633,391	24,595,735	37,656	38.98
교 육 외 비 용	227,155	227,146	9	0.36
전 출 금	0	0	0	-
예 비 비	61,305	0	61,305	-
투자외기타자산지출	1,689,746	1,687,232	2,514	2.67
고정자산매입 지출	1,626,230	1,576,700	49,530	2.51
고 정 부 채 상 환	27,000	27,000	0	0.04
차 기 이 월 자 금	2,155,261	2,716,607	-561,346	4.31
총 계	63,265,278	63,091,520	173,758	100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원본대조필 (인)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1:30~3:35,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4월 20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김대식, 최원일,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0명) :

4. 회의안건

(1) 심의 안건

1) 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건

2) 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3) 법인 2021학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4)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5)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6)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7)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8) 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9)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10) 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조정의 건

(2) 보고사항

5. 회의내용 :

(1) 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이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 전용 결과보고 심의 건이라고 설명하다.

6. 토의 및 결의: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1) 이사장은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해, 내부감사결과는 문승엽 감사(공인회계사)에게 보고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부감사자로 선임된 부일회계법인의 감사결과와 교비회계 결산보고를 김학렬 행정처장에게 요청하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최원일	이사	이 순 걸
------------	-----	-----	----	-----	----	-------

(2)문승엽 감사(공인회계사)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법인과 산하 대학의 회계 감사를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각 이사들에게 배포한 후, 감사내용을 설명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에 따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분리된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는 예산 항·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각종 증빙서류가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어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한다.

(3)김학렬 행정처장은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비회계 수입·지출 총액이 13,402,714천원으로된 2021학년도 결산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집계표를 통해 항목별로 설명하다. 외부감사의견은 2021학년도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보고하다. 계속 이어서 예산전용에 관련한 사항을 준비한 자료를 참조하여 자세히 보고하다.

(4)이사장은 보고받은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 그리고 예산전용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보충질의가 있는지 묻고 토의 및 결의를 진행하다.

(5)김대식이사가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서의 세입·세출에 대해 검토한바, 문승엽 감사의 감사보고와 일치하며 모든 예산이 명확하게 집행되었고, 부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와 경남정보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본 결산(안)과 예산전용 결과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6)오병태이사가 재청하고 임효진이사가 삼청하니, 참석한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부산디지털대학교의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안과 예산전용 결과보고가 원안대로 가결되다.

(7)이사장은 이사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총 수입액 13,402,714천원, 지출액 11,816,528천원, 미사용 차기이월금 1,586,186천원으로된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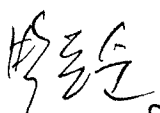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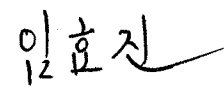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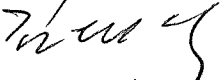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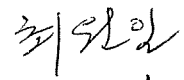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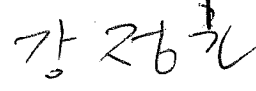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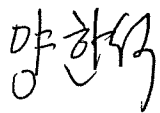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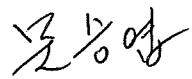
(8)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김대식이사가 이사장, 최원일,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장제국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4. 28.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장 제 국		이 사	김 대 식	
이 사	최 원 일		이 사	오 병 태	
이 사	이 순 결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감 사	문 승 엽	

2021학년도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총괄표

<수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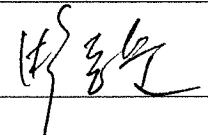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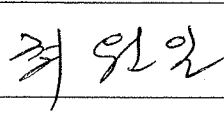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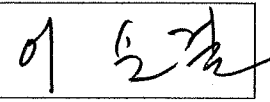
(단위:천원)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비율(%)
등 록 금 수 입	6,641,241	6,632,702	-8,539	49.5
전입금 및 기부수입	4,910,970	4,816,292	-94,678	35.9
교 육 부 대 수 입	17,366	21,668	4,302	0.2
교 육 외 수 입	93,251	93,364	113	0.7
투자및기타자산수입	0	0	0	0
고정자산 매각수입	0	0	0	0
고 정 부 채 입 금	0	0	0	0
전 기 이 월 자 금	1,838,688	1,838,688	0	13.7
총 계	13,501,516	13,402,714	-98,802	100

<지 출>

(단위:천원)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율(%)
보 수	4,349,873	4,344,806	5,067	32.4
관 리 운 영 비	2,226,905	2,142,858	84,047	16.0
연 구 학 생 경 비	5,040,581	4,930,388	110,193	36.8
교 육 외 비 용	30,335	23,184	7,151	0.2
전 출 금	0	0	0	0
예 비 비	1,000	0	1,000	0
투자및기타자산지출	0	0	0	0
고정자산매입 지출	376,822	365,292	11,530	2.7
고 정 부 채 상 환	0	10,000	-10,000	0.1
차 기 이 월 자 금	1,476,000	1,586,186	-110,186	11.8
총 계	13,501,516	13,402,714	98,802	100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원본대조필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1:30~3:35,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4월 20일)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김대식, 최원일,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0명) :

4. 회의안건

(1) 심의 안건

1) 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건

2) 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3) 법인 2021학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4)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5)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6)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 전용결과 보고 건

7)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8) 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9)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10) 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조정의 건

(2) 보고사항

5. 회의내용 :

(1) 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이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건이라고 말하고 토의에 들어가다.

6. 토의 및 결의 :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 동 순	이사	최 원 일	이사	이 순 걸
------------	-----	-------	----	-------	----	-------

- (1)이사장은 이번 회의 안건인 2021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유치원회계 결산(안)에 대해 법인 감사인 문승엽 공인회계사께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해 줄 것과 부속유치원 이은희 행정실장이 결산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2)문승엽 감사(공인회계사)는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결산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관련 서류가 적법하게 잘 구비되어 있으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한다.
- (3)이은희 행정실장은 2021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유치원회계 수입·지출 총액이 1,545,277천원으로 된 결산과 감사보고서를 유인물을 통하여 항목별로 설명하다.
- (4)이사장은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의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보충 질의가 있는지 묻자, 임효진이사가 부속유치원의 2021학년도 결산내용을 살펴본 바,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5)장제국이사가 임효진이사의 동의에 재청하고, 강정호이사가 삼청하니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 하므로, 2021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유치원회계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다.
- (6)이사장은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수입총액 1,545,277천원, 지출액 1,516,131천원, 차기이월액 29,146천원으로된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1)이사장은 계속해서, 이은희 행정실장에게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2)이은희 행정실장은 2022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총액 1,551,127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120,33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는 저소득층의 유아학비지원금 감소와 무상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부담금 경감을 감안하여 121,296천원 감액편성하였고, 지출부는 교사 1명퇴직과 조리종사자 3명의 인건비를 일반교육활동비 내 급식비로 변경됨과 운영비 감액, 일반 교육활동비 증액, 선택적교육활동(방과후과정) 증액, 시설·설비·비품비 감액편성 등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를 통해 증감내역을 자세히 설명하다.
- (3)이사장은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4)김대식이사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의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에 동의하다.
- (5)강정호이사가 김대식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니, 오병태이사가 삼청하고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 하여 본 안건이 가결되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은희	이사	김대식	이사	이은희
------------	-----	-----	----	-----	----	-----

(6)이사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예산 대비 120,330천원이 감액된 세입·세출액 1,551,127천원으로 편성된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의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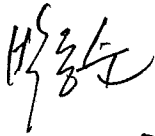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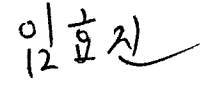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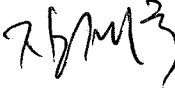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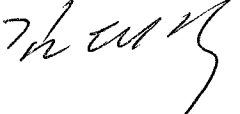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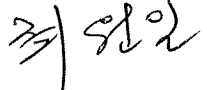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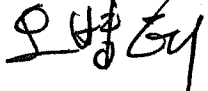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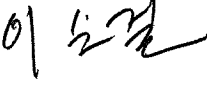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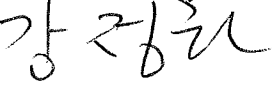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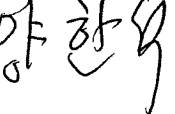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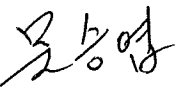
(7)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김대식이사가 이사장, 최원일,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장제국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4. 28.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이 사	임 효 진	
이 사	장 제 국		이 사	김 대 식	
이 사	최 원 일		이 사	오 병 태	
이 사	이 순 결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감 사	문 승 엽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 총괄표

<수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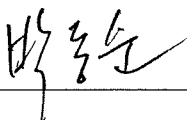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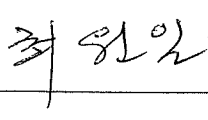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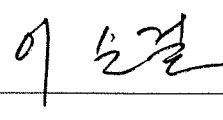
(단위: 천원)

관 별	예 산(A)	결 산(B)	증감(B-A)	비율(%)
보 조 금 및 지 원 금	1,057,169	1,055,782	-1,387	68.3
수 익 자 부 담 수 입	461,411	460,992	-419	29.8
경 영 자 이 전 수 입	0	0	0	0.0
차 입 금	0	0	0	0.0
적 립 금 이 전 수 입	0	0	0	0.0
잡 수 입	890	665	-225	0.1
기 부 . 후 원 수 입	0	0	0	0.0
전 년 도 이 월 금	27,840	27,838	-2	1.8
자 금 수 입 총 계	1,547,310	1,545,277	-2,033	100

<지 출>

(단위: 천원)

관 별	예산(A)	결산(B)	증감(A-B)	비율(%)
인 건 비	1,122,555	1,121,980	575	72.6
운 영 비	94,855	94,340	515	6.1
일 반 교 육 활 동 비	180,930	175,623	5,307	11.4
선택적교육활동비	48,808	48,233	575	5.0
적 립 금	0	0	0	0.0
반 환 금	94	93	1	0.0
시 설 . 설 비 비	78,068	75,862	2,206	4.9
지 난 연 도 지 출 금	0	0	0	0.0
잡 지 출	0	0	0	0.0
예 비 비	22,000	0	22,000	0.0
차 기 이 월 금	0	29,146	-29,146	
자 금 지 출 총 계	1,547,310	1,545,277	2,033	100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괄표

<수 입>

(단위: 천원)

관 별	2022년 1차추경(A)	2022년 본예산(B)	증감(A-B)	비율(%)
보 조 금 및 지 원 금	1,221,907	1,222,151	-244	78.8
수 익 자 부 담 수 입	298,574	419,870	-121,296	19.2
경 영 자 아 전 수 입	0	0	0	0.0
차 입 금	0	0	0	0.0
적 립 금 이 전 수 입	0	0	0	0.0
행 정 활 동 수 입	1,500	1,200	300	0.1
기 부 . 후 원 수 입	0	0	0	0.0
전 년 도 이 월 금	29,146	28,236	910	1.9
자 금 수 입 총 계	1,551,127	1,671,457	-120,330	100

<지 출>

(단위: 천원)

관 별	2022년 1차추경(A)	2022년 본예산(B)	증감(A-B)	비율(%)
인 건 비	1,041,851	1,180,627	-138,776	67.2
운 영 비	87,388	92,842	-5,454	5.6
일 반 교 육 활 동 비	253,789	231,598	22,191	16.4
선 교 육 택 활 동 비	99,053	83,024	16,029	6.4
적 립 금	0	0	0	0.0
상 환 금	0	0	0	0.0
시 설 . 설 비 . 비 품 비	47,046	70,000	-22,954	3.0
지 난 연 도 지 출 금	0	0	0	0.0
잡 지 출	0	0	0	0.0
예 비 비 및 반 환 금	22,000	13,366	8,634	1.4
자 금 지 출 총 계	1,551,127	1,671,457	-120,330	100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수	이사	최원익	이사	이노결
------------	-----	-----	----	-----	----	-----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원본대조필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1:30~3:35,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4월 20일)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김대식, 최원일,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0명) :

4. 회의안건

(1) 심의 안건

- 1) 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건
- 2) 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 3) 법인 2021학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4) 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 5) 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 6) 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 7) 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8) 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 9)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 10) 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조정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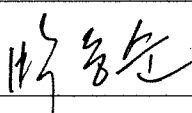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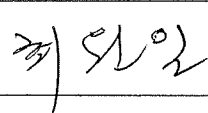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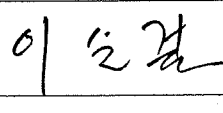
(2) 보고 사항

5. 회의내용 :

- (1) 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 (2) 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

6. 토의 및 결의: 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 (1) 이사장은 서이남 행정실장에게 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2) 행정실장은 이번 회의 안건은 2020학년도 제8차 이사회(2020.12.29.)에서 심의되고, 교육부 허가를 통해 매각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DS빌딩(사상구 괘법동 558-3 토지 및 건물전체)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은 지난 2022년 1월 17일자로 매도 완료되었으나, 그동안 대체부동산(수익용) 매입을 위해 다 각도로 물색하고 검토하였으나 적절한 건물(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여, 신규 부동산 매입이 전까지 부대비용(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및 장기차입금 상환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정기에금으로 적립한 후 임대소득이 많은 신규 수익용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집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3)오병태이사가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금리가 인상되고있어, 임대수익 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좋은 부동산 물건을 매입하기 전까지 정기에금으로 적립하는 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하다.

(4)강정호이사가 오병태이사의 동의에 재청하고, 김대식이사가 삼청, 나머지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다.

(5)이사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DS빌딩(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558-3 대지 및 건물)의 처분금을 신규 부동산 매입 이전까지 비용 및 장기차입금 상환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정기에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차후 신규 수익용재산(부동산)매입 대체충당금으로 사용하는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6)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김대식이사가 이사장, 최원일,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장제국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4. 28.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이 사 장 박 동 순 박동순

이 사 임 효 진 임효진

이 사 장 제 국 장제국

이 사 김 대 식 김대식

이 사 최 원 일 최원일

이 사 오 병 태 오병태

이 사 이 순 결 이순걸

이 사 강 정 호 강정호

감 사 양 한 석 양한석

감 사 문 승 엽 문승엽

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 변경 계획(안)

가. 재산처분 변경 신청 내용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처분금액 (감정평가액)	매도금액	비고
토 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58-3	대 지	2,867.1	29,430,781,500	41,257,300,000	
건 물	" (지하1층~지상3층)	"	철 근 콘크리트	2,191.29	886,403,565	1,242,700,000	부가세 포함
합 계			토지/건물		30,317,185,065	42,5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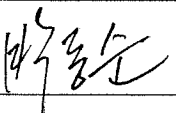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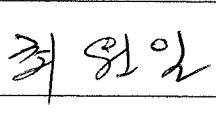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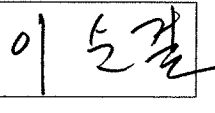
나. 실처분금액: 42,500,000천원(부가세 포함)

다. 처분허가 변경 : (기존)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수익용 부동산)

→ (변경) 수익용 정기에금 예치(대체부동산 매입금)

라. 변경 사유:

우리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DS빌딩(사상구 괘법동 558-3)은 처분허가를 통해 2022.1.17. 일자로 매도완료하였고, 대체부동산(수익용) 매입을 위해 다 각도로 물색하고 검토하고는 있으나 마땅한 물건(부동산)매수가 어려워, 신규 부동산 매입 이전까지 비용 및 장기차입금 상환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정기에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임대소득이 많은 신규 수익용부동산을 매입에 사용하고자 함.

간서명 대 표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학교법인 동서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원본대조필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이사	8 인	2 인
참석이사	8 인	2 인

1.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1:30~3:35,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4월 20일)

가. 참석임원

- 이사(8명) : 박동순, 임효진, 장제국, 김대식, 최원일, 오병태, 이순걸, 강정호
- 감사(2명) : 양한석, 문승엽

나. 결석임원

- 이사(0명) :
- 감사(0명) :

4.회의안건

(1)심의 안건

- 1)법인정관 변경(안) 심의 건
- 2)법인 최원일 이사(교육) 임기만료(2022.06.04.)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 건
- 3)법인 2021학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포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4)동서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 5)경남정보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 6)부산디지털대학교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및 2021학년도 예산전용 결과보고 건
- 7)경남정보대학교부속유치원 2021학년도 유치원회계 결산(안) 및
2022학년도 유치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
- 8)법인 수익용기본재산(DS빌딩) 처분허가 변경(안) 심의 건
- 9)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 10)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조정의 건

(2)보고 사항 :

5. 회의내용 :

- (1)이사장의 사회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다.
- (2)이사장은 회의 안건이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토의 및 결의에 들어가다.

6. 토의 및 결의: 경남정보대학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 심의 건

- (1)이사장은 오늘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서이남 행정실장에게 자세한 설명과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2)행정실장은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요청한 안건으로 클라우드시스템학과와 호텔제과제빵학과를 신설하고 식품영양과와 항공서비스과를 폐지하는 안이라고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하다.

간서명 대 표	이사장	박동순	이사	최원일	이사	이순걸
------------	-----	-----	----	-----	----	-----

(3)회의에 참석한 김대식이사(총장)가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최근 3년간 입시결과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첨단분야의 학과와 현 학과와 연계한 새로운 학과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하고, 신설하는 클라우드시스템학과는 인터넷상 대용량의 데이터 수집·저장·처리와 연계한 인공지능(AI)기반산업을 촉발하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디지털 데이터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함이며, 호텔제과제빵과는 기존의 호텔외식조리계열(외식조리전공/제과제빵전공)중 제과제빵전공을 분리하여 호텔제과제빵학과로 분리신설코자 한다고 말한다.

폐지하는 식품영양과와 항공서비스과는 모집결과를 토대로하여 모집률과 충원율이 급감하여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한 사안이라고 부연 설명하다.

(4)오병태이사가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하다. 강정호이사가 재청하고, 임효진이사가 삼청하니, 참석한 나머지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경남정보대학교의 학과 신설과 폐지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다.

(5)이사장은 이사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경남정보대학교의 학과신설과 폐지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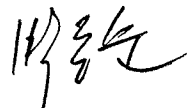
(6)이사장은 이사들에게 간서명 대표를 정하자고 하자, 김대식이사가 이사장, 최원일, 이순걸이사를 추천하자 다른 이사 모두가 찬성하므로 가결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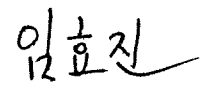
7. 폐회 : 이상과 같이 토의 및 결의를 마치고, 장제국이사의 동의로 오후 3시 35분에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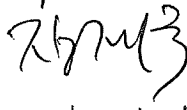
위 사실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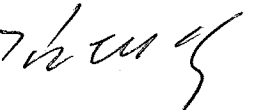
2022.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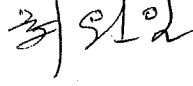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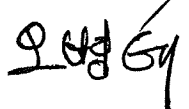
이 사 장 박 동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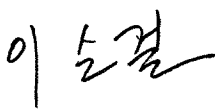
이 사 임 효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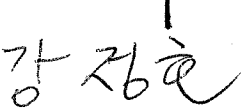
이 사 장 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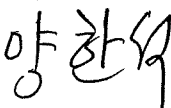
이 사 김 대 식 

이 사 최 원 일 

이 사 오 병 태 

이 사 이 순 걸 

이 사 강 정 호 

감 사 양 한 석 

감 사 문 승 엽 